

의안번호	2115302
의 퇴 인	서일준 의원
회 답 일	2022. 4. 22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2023년 말까지 전세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—

【비용추계서】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2115302)

비용추계서 요약

I. 재정수반요인

- 2023년 말까지 전세버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(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등)

II. 비용추계 결과

- 재정수입 변화 : 2023년 1년간 총 63억원 감소

[표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: 2023년

(단위 : 억원)

	2023
2023년 말까지 전세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(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등)	-63

차 례

I. 비용추계 결과	1
II. 재정수반요인	1
III. 비용추계의 전제	1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	2

일러두기

-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-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2023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3년에 총 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의 비율은 2023년부터 25.3% 적용
 - 부가가치세수 감소액 중 국세인 부가가치세 감소액은 총 47억원, 지방소비세 감소액은 총 16억원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: 부가가치세

	(단위 : 억원)
	2023
2023년 말까지 전세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(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등)	-63
－ 국세(74.7%)	-47
－ 지방소비세(25.3%)	-16

II. 재정수반요인

- 2023년 말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(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등)
 - 개정안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2023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, 부가가치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III. 비용추계의 전제

- 본 개정안이 2022년 중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
- 부가가치세수 감소액은 전세버스 공급가액× 부가가치율× 부가가치세율(10%)로 계산

- 전세버스 공급가액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버스 신규등록 차량의 2018년~2020년의 연평균 취득가액 적용
 -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 21)에 따라 전세버스 수급조절 제한조치에 따라 전세버스의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, 동 조치를 2014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시행중
 - 해당 조치의 연장 여부는 현재 미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자료 활용
-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기업경영분석 중 ‘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’의 2018~2020년 연평균 부가가치율 적용²⁾
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

- (전세버스 신규등록 차량의 취득가액 현황) 최근 3년간 전세버스 신규등록 차량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음
 -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전세버스 신규등록 차량의 취득가액 총계는 다음과 같으며, 2018~2020년의 연평균 금액은 3,497억원

1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제5조의2(여객자동차운수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수급조절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수급조절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이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등록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업체에 따라 판매형태는 상이할 수 있으나, 제조부터 판매까지 한 법인이 전담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사례를 참고해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함

[표 2] 전세버스 신규등록 차량 취득가액 총계
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연평균
전세버스 신규등록 차량 취득가액	3,921	4,234	2,336	3,497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부가가치율)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 ‘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’의 2018~2020년 3년간 부가가치율 적용

- 전세버스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 면제에 관한 내용이므로, ‘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’의 부가가치율 적용
- 2018~2020년의 연평균 부가가치율은 18.14%

[표 3]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의 부가가치율

(단위: %)

	2018	2019	2020	연평균
부가가치율	17.71	19.17	17.54	18.14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)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2023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3년에 총 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-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의 비율은 2023년부터 25.3% 적용
- 부가가치세수 감소액 중 국세인 부가가치세 감소액은 총 47억원, 지방소비세 감소액은 총 16억원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3
2023년 말까지 전세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(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등)	-63
- 국세(74.7%)	-47
- 지방소비세(25.3%)	-16

국회예산정책처	세제분석1과
과	장 박 연 서
추계세제분석관	백 수 연
연 락 처	02-6788-4745
	sooyeon21@na.go.kr
